

改正

# 電氣設備技術基準에 관한 規則 解說

Commentary on Amended Electrical Facilities Technical Standards

(4)

玄 麟 謙

大韓電氣協會 法規研究委員

第103條(高壓屋側電線路의 施設) 本條文中 第2項 第4號가 新設되었다. “케이블”을 吊架用線에 吊架하여 屋側으로 施設할 때에는 第72條(架空 케이블에 의한 施設)에 準하여 施設할 것을 規定하였다.

第3項에서는 지금까지 “高壓屋側電線路를 施設하는 造營物에 特別高壓屋側電線, 다른 高壓屋側電線, 低壓屋側電線, 管燈回路의 配線, 弱電流電線等과 接近 또는 交叉하여 施設하는 境遇에는 高壓屋側電線路의 電線과 이들파의 이격거리는 15cm 以上으로 할 것을 規定”하고 있었으나 이번 改正에서 다른 高壓屋側電線을 削除하였기 때문에 高壓屋側電線相互間은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本條文에서 말하는 電線들이란 케이블을 呼稱하는 것이며 屋側에 施設하는 이를 電線(케이블)을 은폐장소가 아닌 반드시 사람이 點檢할 수 있는 展開된 장소에 限하여 施設하여야 한다.

第104條(特別高壓 屋側電線路의 施設) 本條文中一部의 내용이 改正되었다.

使用電圧이 높아질수록 그 危險정도나 事故의 波及범위도 커지기 때문에 特別高壓 屋側電線路는 原則적으로 施設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規制하고 있으나 다만 100kV 以下로서 第103

條의 規定에 準하여 施設하는 때에는 屋側電線路를 施設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다.

改正된 條文中 第103條 第2項 第4號의 “第72條는 第114條로 본다”라고 하는 뜻은 第72條(架空 케이블에 의한 施設)는 第114條(特別高壓 架空 케이블에 의한 施設)로 알고 特別高壓 架空 케이블에 의한 施設 規定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第110條(高壓引入線等의 施設) 本條文 第1項中 “高壓絕緣電線 또는 第37條 第2號에 規定하는 碍子使用工事에 의하여 施設하고” 條文內容 안에 特別高壓 絶緣電線이나 케이블을 使用하여 施設할 것을 追加하여 “高壓絕緣電線, 特別高壓 絶緣電線 또는 第37條 第1項 第2號에서 規定하는 引下用 絶緣電線을 碍子使用工事에 의하여 施設하거나 케이블을” 使用하여 施設하도록 할 것을 追加 規定하였다.

즉, 引入線은 需用場所에 接近하고 있기 때문에 危險度를 考慮하여 電線은 5mm 以上的 硬銅線을 使用한 高壓絕緣電線·特別高壓 絶緣電線 또는 引下用 絶緣電線을 使用한 碍子使用工事의 施工이 아니면 케이블工事로만 施設할 것을 規定하고 지름 5mm 미만의 硬銅線의 使用은 禁止하였다.

**第111條(特別高圧 引入線等의 施設)** 本條文은 特別高壓 架空引入線 全般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다. 第1項은 變電所 또는 開閉所에 準하는 場所에 引入하는 特別高壓 架空引入線은 特別高壓 架空電線에 準하여 施設할 것을 規定하고 있으며, 즉, 第115條(特別高壓 架空電線의 세기·굵기 및 種類)外에, 支持物等과의 이격거리(第116條)·安全率(第117條)·높이(第118條)·碍子裝置(第120條)·建造物과의 接近(第134條)·道路等과의 接近 또는 交叉(第135條)·索道와의 接近 또는 交叉(第136條)·架空弱電流電線等과의 接近 또는 交叉(第137條)·特別高壓 架空電線 相互의 接近 또는 交叉(第138條)·다른 工作物과의 接近 또는 交叉(第139條)·줄뚝等과 接触할 우려가 있는 경우(第141條)·植物等과의 이격거리(第142條)等, 여러 條文의 規定에 부합하여 施設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第2項은 特別高壓 架空電線路의 電線으로서 케이블을 使用하는 경우에 特別高壓需用家の 變電室等에 直接 引入하지 않고 일단 建築物에 引留한 후 變電室(受電室)等에 引入하는 경우와 特別高壓 機器를 使用하는 工場等의 構内에 特別高壓 架空電線路를 引入 施設한 후, 使用場所에 直接 끌어들이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第1項以外의 경우로서 電压은 100kV 以下이고 또한 電線은 케이블로 限定하여 特別高壓 架空電線에 準하여 施設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의 施設方法으로는 特別高壓 架空電線路로서 당연히 第114條(特別高壓 架空 케이블에 의한 施設)에 準하여 施設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第3項은 特別高壓 架空引入線을 引入한 建築物에 대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이격거리部分에 限하여 建築物과의 接近(第134條) 및 다른 工作物과의 接近 또는 交叉(第139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第4項은 特別高壓 配電線路의 電压이 35kV以下(實際, 우리나라의 配電電壓으로는 25kV 以下에 該當)로서 電線에 케이블을 使用하는 경우에

限하여 道路等의 橫斷 以外의 場所의 地表上의 높이를 4m 까지 減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第112條(特別高壓 架空電線路의 市街地等에 있어서의 施設制限)** 本條文中 이번 改正된 部分은 第1項 第5號와 第6號이다.

第5號에서는 表中의 特別高壓 配電線路의 地表上의 높이가 從前의 8m에서 10m로 上向 調整되었다. 다만 電線을 特別高壓 絶緣電線으로 使用하는 경우에는 從前과 같이 8m로 하여도 되도록 하였다. 最近, 大都市에 있어서 特別高壓 配電線路는 漸차 地中線化하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都市의 美化와 外部의 충격으로 因한 電線路의 災害는大幅 減少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大都市의 群少都市에서는 架空配電線路方式이 그대로 使用되고 있기 때문에 市街地에서의 電線의 높이는 다른 施設物과의 接近·交叉等의 機會가 많고 또한 크레인 作業車의 빈번한 來往, 火災時의 消防活動에 있어서 電線과의 接近에 의한 危險防止等을 考慮하여 配電線의 地表上의 最低 높이를 10m로 上向 規定하였고 電線을 特別高壓 絶緣電線으로 使用할 경우에는 단일 接触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高壓 絶緣電線보다는 그 以上의 安全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高压架空電線의 地表上의 높이(第75條) 6m와 裸電線의 地表上의 높이 10m의 中間值를 取하여 8m로 定하였다.

第6號에서는 市街地에 施設하는 特別高壓 架空電線路 支持物에는 「危險表示」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特別高壓 架空配電線路(25kV 以下)에 使用하는 電線을 特別高壓 絶緣電線으로 使用하는 경우에는 「危險表示」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追加 規定하였다.

**第113條(誘導障害의 防止)** 本條文은 靜電誘導障害防止에 대한 規定이다. 第71條에서는 架空弱電流電線路에서의 誘導障害 防止에 대한 規定이 있었으나 特히 靜電誘導作用은 架空電線路의 電压이 높을수록 이격거리가 가까울수록 障害의 度가 심한 것이며, 우리나라도 超高壓 送電方式

이採擇되고 있는現實에 있어서送電線路等을建設할 때는既設架空弱電流電線路, 道路 또는民家와의接近關係等을 충분히調查하여차질이 없도록 할필요가 있다.

이번改正中第1項第1號는從前의25kV以下인경우를60kV以下인경우로上向規定하고從前에25kV以下인경우에電話線路길이4km마다誘導電流가 $1.5\mu A$ 를넘지않도록하였던것을이번改正에서는60kV以下인경우에전화선로길이12km마다유도전류가 $2\mu A$ 를넘지않게하도록規定하였고, 第2號는60kV를넘는경우에전화선로길이40km마다유도전류가 $3\mu A$ 를넘지않도록할것을規定하였다.

특히우리나라의配電方式은電壓은25kV以下이지만三相四線式의中性線多重接地의配電線路이기때문에故障時의地絡電流에의한障害와不平衡電流에의하여發生하는電磁誘導作用이近接한通信線等에끼칠雜音等을考慮하여適切한防護對策이講究되어야한다.

第3項은우리나라도345kV의높은電壓의送電線이出現한데수반하여人体에미치는靜電誘導의電擊을防止할必要性에따라서規定한條文이다.

靜電誘導란높은電壓의送電線路下方의電界中에어떠한絕緣된導電體가있으면大地와의사이에電位差가생기는現象을말하며, 이導電體에사람이接触하면바늘로찌르는듯한瞬間的이지만強한刺激을주게된다. 이것은絕緣된導電體에靜充電되었던電荷가人体를通하여放電되는現象으로나타나기때문이다. 이와反對로接地된導電體에絕緣된人体가接触하였을때도人体에靜充電되었던電荷가接地된導電體를通하여放電現象을일으키며強한刺激을주게된다.

送電線路가通常狀態에있어서一般的으로感電에의한安全界限는維持하고있다고는하지만이것을더욱確實하게하기위하여特別高壓架空電線路는地表上1m에서電界強度가 $35V/cm$ 以下가되도록할것을規定함과同時에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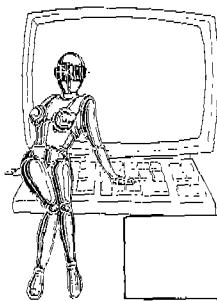
電誘導作用에의하여人体에위험을줄우려가없도록施設할것을強力하게要求하고있다. 다만, 논, 밭, 山林, 기타 사람의往來가적은場所로서 사람에게 위험을줄우려가없도록施設할때는어느정도 $35V/cm$ 가넘어도되도록완화하였다.

第115條(特別高壓架空電線의세기·굵기 및種類)本條文中從前의末尾에規定하고있던“다만, 第143條(25kV以下인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施設)第1項에規定하는特別高壓架空電路의電線에는지름5%의硬銅線等을使用할수있도록하였던것을이번改正에서削除하였기때문에앞으로는22.9kV(11.4kV)의特別高壓架空電線에는케이블을包含해서斷面積이 $22mm^2$ 以上의硬銅撚線 또는이와同等以上の세기및굵기의撚線만을使用하도록上向調節하였다.

第118條(特別高壓架空電線의높이)本條文은特別高壓架空電線의地表上, 橫斷步道橋의路面上, 軌條面上, 水面上 및積雪面上의높이를規定한것으로서이번에改正된部分은第75條(低高壓架空電線의높이)에서도記述한바와같이鐵道 또는軌道를橫斷하는경우에는6.5m以上의높이로할것을上向規定하였다.

第120條(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碍子裝置等)本條文은特別高壓架空電線路에使用하는碍子裝置 및腕金類와불임金具等에관한規定이다.

이번改正된部分은從前의第2項의內容을分類하여第2項과第3項으로나누어서각기接地할곳을명확하게하였다. 즉, 第2項에서는碍子裝置를붙이는腕金類에는반드시第3種接地工事を할것을規定하고있다. 이것은腕金類는腕木이아닌金屬製의것인뜻도內包하고있으며, 閃絡또는碍子의損傷等의事故로漏洩電流가흘러腕木等이燒損하는것을防止함과同時에鐵柱等에있어서는電位上昇에依한危險防止와1線地絡事故일때保安裝置의動作을확실하게피할것등을고려한때문



## 용어해설

### 메커트로닉스 기초 이해를 위한

####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미국의 수학자 N.위너가 1948년에 그의 저서에서 사용한 후 널리 보급된 언어로서 「인간과 기계에서의 제어와 통신 이론 및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되었다.

회람어의 「키를 잡는 사람」이라는 말이 어원으로서 인공의 기계나 자연의 동물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시시각각 자기의 동작을 수정하면서 근접해가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논한 것이다.

이것에 따라서 목표로부터 벗어난 정보를 검출하여 제어장치에 보내서 다음 단계의 동작을 정하는 피드백 제어의 개념이 명확해지고 현대 오토메이션의 이론적인 기초가 확립되었다.

이다.

第3項은 종전의 第2項中의 特別高壓 架空電線路의 支持物로 使用하는 木柱에 편 碍子 또는 라인포스트 碍子를 直接 붙이는 金具에는 역시 第3種接地工事を 할 것을 規定하였다. 다만, 第2項, 第3項 共히 第143條의 特別高壓 架空電線과 電線路는 除外하고 있다.

第124條(特別高壓 架空電線路의 鐵柱·鐵筋 콘크리트柱 또는 鐵塔의 強度等) 本條文은 特別高壓 架空電線路에 使用하는 鐵柱·鐵筋 콘크리트柱 및 鐵塔의 部材强度에 관한 規定이다. 그 中 第1項에 複合 鐵筋 콘크리트柱에 關한 強度規定을 追加하였다.

支持物(鐵塔·鐵柱·콘크리트柱等)에 관한 設計 또는 施工上의 取扱等을 專門의 으로 하는 會員께서는 쉽게 理解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會員께서는 혼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A種 또는 B種 支持物에 관한 用語等을 本規則과 本協會의 “配電規程”等에서 抜萃하여 掲載하기로 한다.

配電線路의 支持物과 같이 비슷비슷한 것을 여러 基계속하여 建柱施設할 때에 每基마다의 基礎의 強度計算을 하기에는 곤란하고 實際로 그 差位도 그리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만,

支持物(電柱等)의 全長에 對한 땅에 묻히는 깊이와 根枷의 施設等을 地盤의 強弱에 따라 堅固하게 할 것 等으로 別分하여 定하고 있다.

「A種鐵筋 콘크리트柱·A種鐵柱」라고 하는 것은 鋼板組立柱 및 鋼管柱 또는 鐵筋 콘크리트柱에 있어서 全長은 16m 以下이고 設計荷重은 700kg 以下인 것으로서

○全長이 15m 以下인 경우는 묻히는 깊이를 全長의 1/6 以上으로 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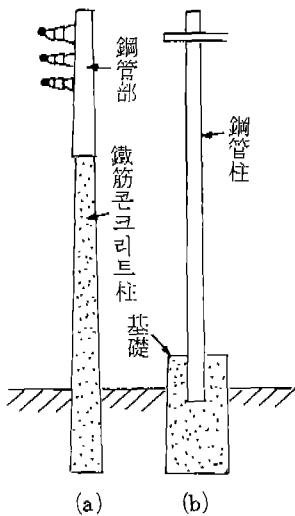
○全長이 15m를 초과하는 경우는 묻히는 깊이를 2.5m 以上으로 한 것.

○는, 기타 地盤이 弱한 곳에서는 特히 堅固한 根枷를 묻는 때의 것.

○鐵筋 콘크리트柱로서 全長이 14m 以上 17m 以下이고, 設計荷重은 700kg~1,000kg 以下인 것을 地盤이 堅固한 곳에서 묻히는 깊이를 全長이 15m 以下인 경우는 全長의 1/6 以上.

全長이 15m를 초과하는 경우는 묻히는 깊이를 2.5m 以上으로 하고도 각각 30cm을 더 加算하여 묻을 때의 支持物을 말하며, 이를 支持物을 總稱하여 「A種柱」라 한다.

「B種鐵筋 콘크리트柱·B種鐵柱」라고 하는 것은 A種鐵筋 콘크리트柱, A種鐵柱以外의 鐵筋 콘크리트柱 또는 鐵柱로서 基礎의 強度計算을 하



〈그림〉 複合鐵筋 콘크리트柱

여 施設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支持物을 總稱하여 「B種柱」이라 한다.

「鐵柱」라고 하는 것은 大別하여 鋼板組立柱와 鋼管柱로 나누어지며 鋼板組立柱는 鋼板을 管狀으로 만들어 組立한 것을 主体로 한 鐵柱이며 鋼管柱는 主로 鋼管만으로 만든 鐵柱를 말한다.

「複合鐵筋 콘크리트柱」라고 하는 것은 그림(a)에서 보는 바와 같이 鋼管部와 鐵筋 콘크리트柱의 基礎部를 組合하여 한 基의 支持物로 하여 使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b)는 鋼管柱가 땅에 둘리는 部分을 부식을 防止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基礎를 한 것으로서 複合鐵筋 콘크리트柱로 볼 수는 없다.

第128條(特別高圧 架空電線과 低高圧 架空電線과의 併架) 特別高圧 架空電線路의 支持物에 低高圧 架空電線路를 같이 施設하는 것은 混触에 의한 危險外에도 特別高圧 架空電線路의 事故時에 異狀電圧이 低高圧 架空電線路에 侵入하거나 靜電誘導等에 依한 障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可能限한 施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不得已한 경우는 本條에 의하여 強化된다.

施設方法으로 施設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이번 改正된 部分은 第1項 第4號에 特別高圧 絶緣電線의 使用을 追加하였고, 第1項 第5號의 改正에서는 特別高圧 架空電線路에 低高圧 架空電線을 併架할 경우에는 特別高圧 架空電線이 ケ이블인 경우를 除外하고 低高圧 架空電線에 保安裝置를 取附할 것을 第26條(特別高圧과 高圧의 混触等에 의한 危險防止施設)의 規定에 의하여 義務化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改正에서 第112條(特別高圧 架空電線路의 市街地等에 있어서의 施設制限) 第1項 但書의 各號의 規定(碍子裝置의 強化, 徑間의 制限·木柱의 使用禁止·굵은 電線의 使用等)에 準하고 또한 危險의 우려가 없도록 施設하면은 断線으로 인한 事故는 比較的 抑制할 수 있고, 또한 特別高圧 架空電線에 特別高圧 絶緣電線을 使用하는 경우에는 特別高圧側 電線과 併架한 低·高圧電線이 空間에서 接触하더라도 導體相互間의 接触은 아니고 絶緣被覆 相互間의 接触만으로는 支障을 야기할 事故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實驗結果에 따라 特別高圧電線을 ケ이블일 때와 같이 低高圧 架空電線에 保安裝置를 施設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規定하였다.

第130條(特別高圧 架空電線과 架空 弱電流 電線과의 共架) 本條文은 第128條의 解說과 같이 第112條 第1項 但書 各號의 規定에 適合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施設할 때, 共架하는 架空 弱電流 電線은 特別高圧電線으로부터의 誘導障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電氣的 遮蔽層이 있는 通信用 ケ이블을 使用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金屬遮蔽層附 通信 ケ이블은 高價이기 때문에 施設하는 데 經濟的 負擔이 크며 誘導障害의 強弱의 限界도 弱電流電線의 種類와 共架하는 距離間隔에 따라 一率의 아니기 때문에 架空 弱電流 電線路의 管理者의 承諾를 얻었을 경우에는 金屬遮蔽層附 通信 ケ이블이 아니더라도 되는 것을 第5號에 追加 規定하였다.

(다음號에 계속)